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11호
2. 발 의 자 : 박상혁 의원
3. 발의일자 : 2025. 3. 31.
4. 회부일자 : 2025. 4. 2.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 중 제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아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학교’ 등으로 되어 있거나 제명에 자치단체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가 다수 있음.
- 자치법규의 제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 시킴으로써 소관 기관의 명확성 및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례명을 정비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 중 제명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조례의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으로 변경함.
2.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 중 제명이 '서울특별시립학교'로 되어 있는 조례의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로 변경함.
3.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 중 제명이 '서울특별시립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으로 변경함.
4.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 중 제명이 '서울특별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으로 변경함.
5.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 중 제명에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누락된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추가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31일 박상혁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611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제명에 기관명이 없거나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를 정비함으로서 조례의 명확성 및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24건의 조례의 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으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1) 법체처(2022).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341페이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제정 및 규율하는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명에 있어 기관명의 부재는 자치단체의 유사한 조례의 혼재속에서 적용 대상인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더욱이 이는 행정의 불명확성을 높여 조례의 적용 사무에 대한 혼란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 따라서 조례의 제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포함시키는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소관 기관을 적용 범위를 제명에 규정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와의 혼란을 방지하며²⁾,

행정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입법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제명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³⁾.

나. 기타

○ 한편 현재 서울시교육청 조례 중 조례명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포함되지 않은 조례는 총 41개로, 이 중 동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된 23건의 조례를 제외하고 학생인권조례⁴⁾ 관련 조례 2건(‘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조례 13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조례 3건 등 총 18건의 조례는 동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23건)되지 않았습니다.

2)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342페이지.

3) 법제처 2016.7.29. 회신 16-0183 의견제시 사례.

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4년 4월 26일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폐지되었으나 이후 2024년 5.16일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요구하였고, 2024년 6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됨.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7월 11일 대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후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하여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학생인권 관련 조례명 개정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표-1] 서울시교육청 조례 제명 유형 및 사례

구분	조례 제명 유형	사례수
1	•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18
2	• '서울특별시립학교'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3
3	• '서울특별시립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4	• '서울특별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2
5	•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누락된 조례 예시: 서울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1
6	•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3
7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3
합계		41

○ 먼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표현된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한해 ‘집행기관’을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5), 이러한 교육감의 권한 중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6).

- 또한 같은 법 제27조7)는 ‘교육감’에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더욱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도교육청’을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하고 있는바,

-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도교육청’을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감 관장 사무,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감의 사무 위임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집행기관’의 명(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아닌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제명에 쓰는 것이 법적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조례 제명 중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규정된 조례는 총 3건이며, 이 역시 동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중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회계임에 따른 것입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8).

-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조례 제명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서울특별시교육청)을 쓰는 것이 아닌 현행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정합성 측면과 회계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 4. 9.).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2180-8270)
----------	----------------	-------	----------------